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호로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5조제1항에서 현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는 1천분의 34로 규정하였으며,

-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이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향후에는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2016. 12. 27. 상위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